##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2353 제출연월일: 2024. 7. 29.

제 출 자:정 부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을 부담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자율적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「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351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#### 법률 제 호

##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"출연"을 "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"으로 하며,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.

① 제조업자는 보건의료 • 환경보호 등의 공익사업과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직접 하거나 해당 사업을 하는 자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.

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공익사업 등을 위한 출연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제조 업자가 제조한 궐련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궐련의 경우에는 제 2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### 신・구조문대비표

개 정 안 혀 행 제25조의3(제조업자 등의 공익사 제25조의3(제조업자 등의 공익사 업 참여) ① 제조업자는 보건의 업 참여)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조업자로 하여금 그가 판매하 료 • 환경보호 등의 공익사업과 는 담배 중 궐련에 대하여 20개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직접 비당 20원의 범위에서 기획재정 하거나 해당 사업을 하는 자에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 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 건의료・환경보호등의 공익사 연할 수 있다. 업과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직접 행하게 하거나 이들 사업 을 하는 자에게 출연하도록 할 수 있다. ② 수입판매업자는 제1항에 준 하는 공익사업을 직접 하거나 해당 사업을 하는 자에게 출연 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1항을 준 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--------. <후단 삭제> 용한다. ③ ~ ⑤ (생 략) ③ ~ ⑤ (현행과 같음)